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('20.8.28.)에 따른
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안내

❖ '19.8.27. 제정되어 **'20.8.28. 시행 예정**인 일학습병행법의 주요 내용 중 **일학습병행자격 취득**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해 드리니 자격증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대상

○ 일학습병행법 시행에 따라 **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**하고 **외부평가에 합격**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**합격자**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**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이 가능**합니다. <법 제31조>

○ **'20.8.28. 이전** 외부평가에 합격한 **수료자도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이 가능**합니다. <법 부칙 제3조>

□ 일학습병행자격증 신청 및 발급 형태

○ **자격증 발급 신청**은 인터넷(c.q-net.or.kr)을 통해 가능하며, **개인 프린터로 즉시 출력하는 "상장형"**, 공단에서 일괄 발급하여 **우편으로 송부하는 "수첩형"***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**세부 발급절차**

1. 상장형 자격증	→	**CQ-Net 발급신청** (사진, 주소 등 정보입력)	→ **자체 출력**
2. 수첩형 자격증	→	**CQ-Net 발급신청** (사진, 주소 등 정보입력)	→ **정보검증 및 발급심사** (지역일학습지원부)
	→	**자격증 발급 및 배송** (서울지부 자격시험부)	→ **자격증 수령** (취득자 배송희망지)

* 상장형은 별도의 발급 비용이 없으며, 수첩형의 경우 '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발급 수수료 적용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